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 임등에관한조례 (안) 심사보고서

'94. 5. 30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재영의원외 5인

나. 발의일자 : 94. 3. 14

다. 회부일자 : 94. 3. 16

라. 상정일자

- 제2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4. 3. 21)최초 상정(질의 및 토론)
- 제2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계속 상정(토론)
- 제2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계속 상정(토론)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합리적인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종합시책의 수립
 - 사회복지사업 상호간의 조정 및 균형발전
 -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시행
 - 사회복지 시설의 건립
-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 : 사회산업국장
 - 위원수 : 15인 ~ 20인 이내

- 위원 구성 대상
 - ①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관련공무원
 - ③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 ④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위원 임기(안 제4조)
 - 3년(* 공무원은 재직하는 기간)
- 위원의 수당 및 여비(안 제8조)
 -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 복지 위원(안 제11조)
 - 위촉 : 구청장
 - 인원 : 동당 2명
 - 임기 : 3년
 - 직무 : 사회복지대상자(영세민등)의 선도 및 상담등의 봉사활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 제정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음. 본 사회복지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서 각종 복지사업의 기본 계획과 종합시책의 수립등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지행정이 수행되리라 생각됨

본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4호(구의회에서 추천하는자)와 제8조(위원의 수당)은 위원 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지침에는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치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음

제11조 3항 복지위원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한다. 라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는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 면, 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 군, 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본 조례(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수당), 제11조(복지위원)에 대하여는 밀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4. 질의답변 요지

〈답변자 : 사회과장 김선호〉

- 본 조례 제정(안)의 기능을 현재 구정조정위원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관리심사위원회등이 분담하고 있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각급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하는 과정에 위원회 기능을 본 조례(안) 사회복지위원회로 단일화하면 어떠한가?
- 개별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구의 위원회라 든가 조례등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본 조례를 제정하면 타당하리라 생각함, 만약 정비치 않고 또다시 위원회를 설치하면 집행에 혼란이 예상됨
- 사회복지법(제5조)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는 강제 규정인가 임의규정인가 그리고 만일 복지위원회를 둘때 장점은 무엇인가?
- 강제규정은 아님, 지금 각종 위원회와 조례가 본 위원회 조례에 다 포함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시행하는데 모든 절차가 신속해지고 외부의 사회사업에 대한 학식이 높은 분들이 복지위원으로 선임되면 좋은 의견이 제안될 것으로 생각됨
- 우리 자치구에서 제일 먼저 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된다는 사회과장의 견해는?
- 모든 업무를 제일먼저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님,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모든 예산이나 인력, 업무 조정권까지 상하관계가 있음
우리 구에서 본 위원회를 제일먼저 실시할 때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지시 행정사항들을 어떻게 본 위원회와 조화시켜 집행할지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 될 것으로 생각함.

<답변자 : 이재영 의원>

- 현재 위원회가 각 실과마다 많이 존치하고 있는데 위원회 조례를 집행부와 사전에 전부 발췌 집약하여 통합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한가?
- 통합하면 좋은데 현재 개별법이 산만하고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 생보자 대상 선정하는 것까지 심의하니까 조례를 만들면 사회복지위원회로 시간을 두고 업무를 이양하면 될 것임
- 본 조례(안)을 금일 찬반으로 해서 가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자 하는데?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에 전문가이신 대학교수에게 자문을 받고 지금 조례의 항목별 사항들은 거의 90%가 보건사회법, 사회복지법 시행령을 그대로 옮겨 놓았으므로 달서구에 필요한 사항 몇가지를 삽입해 놓은 것으로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한 법적인 하자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찬성 :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사회복지시설의 건립등은 사회복지 전반에 관여하는 위원회이므로 이제까지 관에서 편의적으로 심사하던 것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므로 주민의 편에서 위원회 운영이 될 것이고 또한 각종 개별법에 의하여 사회복지 업무가 각 위원회로 흩어져 있는 것을 본 조례로 통합운영하면 집행의 효율성이 있음
- 반대 : 이제까지 사회복지법이 정비되지 않고 올 연말 정기 국회에 개정될 예정이며 또한 사회복지 예산 대부분이 국비 시비이며 지방비의 예산은 미약하므로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거의 없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가 이제까지 제정되지 않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다수있다고 보며 시기상조임, 그리고 현재 관변단체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에 다시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사장될 우려가 있음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안 요지

- 제3조 제3항 4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의회의 의결 및 감사기관이므로 삭제
- 위원의 임기를 구 복지위원이나 동복지위원 3년은 길어 2년으로 수정
- 제11조의 복지위원을 동복지위원이므로 구복지위원과 혼돈, 그리하여 “복지위원”을 “동복지위원”으로, 3항 정수를 동 실정과 융통성 있게 “각 2인”으로 “2인 이상”으로 수정

나. 수정내용 : 별첨 수정안 대비표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사회복지법과 예산이 미비된 가운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는 시기상조임

9. 첨부 : 수정 조례안 1부.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 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중수정(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달서구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설치및운영과 동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의 선임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 시책의 수립
2. 사회복지사업상호간의 조정·균형발전
3.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 시행
4. 사회복지 시설의 건립
5. 기타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 3 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련 행정기관공무원
3.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분과위원별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 8 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서류비치) 안건의 심의 의결때에는 심의 의결서에 참석자 전원이 날인하며,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위원회 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 위원회의 정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1 조(동복지위원) ① 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동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동복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동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이상으로 한다.

④ 동복지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여자 동법 제 2 조 제 1 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보호의 의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알선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 관계단체와의 협력
4.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⑤ 동복지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구청장은 동복지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거나 정치활동 기타 직무와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동복지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 3 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2. 관련 행정기관공무원</p> <p>3.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p> <p>4. <u>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u></p> <p>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분과위원별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p>	<p>제 3 조(위원회의 구성) ①</p> <p>.....</p> <p>.....</p> <p>②</p> <p>.....</p> <p>.....</p> <p>③</p> <p>.....</p> <p>1.</p> <p>.....</p> <p>2.</p> <p>.....</p> <p>3.</p> <p>.....</p> <p>4. <u>(삭제)</u></p> <p>④</p> <p>.....</p> <p>.....</p>
<p>제 4 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u>3년</u>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 4 조(위원의 임기)<u>2년</u>.....</p> <p>.....</p> <p>.....</p> <p>.....</p>
<p>제11조(복지위원)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u>복지위원</u>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당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p>	<p>제11조(동복지위원) ①</p> <p>.....<u>동복지위원</u>.....</p> <p>.....</p> <p>.....</p> <p>1.</p> <p>.....</p>

